
2018 윤리감사 보고서

2019. 02. 28



감 사 실

목 차

I. 윤리감사 개요	1
① 감사실시 근거	1
②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내용	1
③ 윤리감사 보고의무	1
II. 항목별 추진실적	2
① 제13조(윤리행동강령)	2
②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7
③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8
④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10
⑤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13
⑥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15
III. 2019년도 윤리감사 계획	17
붙임 : 2018년도 자체감사 실적	19

① 감사실시 근거

- (법률 제14839호 2018.07.26) 「원전비리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이하 '원전감독법' 시행 2018.07.26)
- 공공기관 감사 : 윤리감사 시행 후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

②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내용

- 「원전감독법」 제19조(윤리감사)에 따라 감사는 제13조-제18조의 임직원·협력업체의 준수 의무 등에 관하여 정기/수시 감사 보고
-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 내용

대 상	준 수 내 용
(제13조) 윤리행동강령	▶ 윤리행동강령의 제정 및 공개, 준수여부
(제14조) 임직원의 재산등록	▶ 2직급이상 직원의 재산등록 이행여부
(제15조) 임직원의 취업제한	▶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기관 취업제한 (재산등록 의무자) 위반 여부
(제16조) 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 사적이익 추구 및 특혜 목적의 정보제공 금지·이용 위반 여부
(제17조) 영리 업무의 금지	▶ 직무 외 영리목적의 업무 종사금지 위반여부
(제1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협력업체의 행위제한(뇌물 등 공여, 부당한 원전 정보 취득 및 이용, 품질문서 위·변조 등) 위반 여부 및 후속조치(등록취소/입찰제한) 적정성

③ 윤리감사 보고의무

- 윤리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

1 제13조(윤리행동강령)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감법') 제13조(윤리행동강령)에 의거, 원자력발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은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 및 공개 의무화

「원감법」 제13조(윤리행동강령)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공직 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명시

나.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주요 내용

조 항	주 요 내 용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5조)차별대우 금지 (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6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6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6조의4)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6조의5) 외부고객 방문시 청탁물품 사전차단 조치 (7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8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9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0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1조)가족 채용 제한 (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4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1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18조)퇴직자의 취업 제한 등 (19조)공용 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3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24조)금품 등 제공 금지 (2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6조)협력업체 대상 윤리 행동기준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27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28조)투명한 회계처리 (29조)정보의 유출 금지 (30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제5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구성	(31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31조의2)외부강의·회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31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32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33조)건전한 경조사문화의 정착 (3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행위의 제한 (35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36조)성범죄 행위 금지 (36조의2) 음주운전 금지
제6장 위반시의 조치	(3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38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39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39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심의회 (40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다.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개정 이력

- 2013.06.28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정
- 2018.01.30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12차 개정

개 정 사 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8.01.17.) 내용 반영 - 외부강의·회의 등 관련 제도 정비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책임자에 계약실장 추가 -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 조정 - 선물에서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회의 등 사전 신고사항 개정 및 보완 신고기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신고서상 ‘요청 사유’ 항목 삭제 · 신고 보완기간(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조항 신설 - 외부강의·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 40만원으로 통일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대상에서 겸직허가를 받은 대학(원) 등 출강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제2조 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제26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26조의2 (별표3) 제26조의2</p>

- 2018.06.14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13차 개정

개 정 사 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내용 반영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사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 - 민간 분야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의2</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p>

개 정 사 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화 · 임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법인 등의 대리, 다른 직위에서의 취임 등 금지 -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임원 등의 가족을 소속기관 및 자회사 등에 채용 금지 · 임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기관 및 자회사 등과의 수의 계약 체결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동력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물품 등 계약체결, 부동산 등 거래시 신고 	<p>제9조</p> <p>제10조</p> <p>제11, 12조</p> <p>제21조</p> <p>제32조</p>

□ 2018.10.26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14차 개정

개 정 사 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조항 반영 - 청렴시민감사관 권고의견 반영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조항 신설 - 국제수준의 부패방지 경영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근거 조항 신설 	<p>제46조</p> <p>제47조</p>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공개 : 인트라넷 및 홈페이지 공개

라.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

□ 윤리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 '18년 총 12회 시행

점검내용	점 검 항 목	점 검 기 간	조 치 내 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2018.01.29 - 01.31	▶ 위반사항 없음
		2018.10.01 - 10.18	
외부강의 신고현황	외부강의 시간 및 대가 초과	2018.09.10 - 09.19	▶ 위반사항 없음
공직기강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위반 등	2018.02.06 ~ 02.08	▶ 위반사항 없음
		2018.04.30 ~ 05.04	
		2018.07.11 ~ 07.13	
		2018.09.11 ~ 09.21	
		2018.10.29 ~ 10.31	
		2018.11.19 ~ 12.31	
행동강령 위반사항	직원간 부당행위 관련 특별감사	2018.04.06 ~ 04.27	▶ 징계 1명 ▶ 경고 2명
	인도네시아 종합감사	2018.05.15 ~ 05.18	▶ 권고
	UAE아부다비 지사 특별감사	2018.06.19 ~ 06.21	▶ 권고

* 행동강령 특정 위반사항인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음주운전 금지 위반사항 없음

②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가. 관련법령

- 「원감법」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에 의거하여 한국전력기술 2직급 이상 임직원은 재산등록 대상

「원감법」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을 준용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등에 임직원 재산등록 규정화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 임원 → 2직급 이상으로 확대(2014.07.01)

나. 2018년도 재산등록 시행 현황

- 2018년 공기업 전환으로 기관장, 상임감사는 재산공개대상자로 지정되어 2018년 하반기부터 재산내역 공개
- 2018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대상자 중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심사결과 5명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③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감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에 의거하여 재산등록 대상인 한국전력기술 2직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 후 업무관련 기관에 퇴직 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준용)

「원감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 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협력업체 적격심사시 2직급이상 퇴직자 영입확인서 의무징구 여부
- 취업제한 담당부서의 취업제한 관련 교육 및 안내 실시여부 점검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협력업체 적격심사시 2직급이상 퇴직자 영입확인서 의무징구 : 시행중
 - 상기 건에 해당하는 취업제한 협력업체 위반 없음
- 2018년도 정부공직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심사결과 : 임의취업 1건
 - 후속조치 완료(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결과 "취업 가능")

□ 취업제한제도 교육 실시(총 4회)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2018.07.18	에너지신사업본부 임직원(318명)	공직자윤리법 관련 퇴직자취업제한제도 주요내용 및 취업심사절차 안내
2018.07.19	원자력본부 임직원(633명)	
2018.10.18	정년퇴직 2년전 예정자 등(42명)	
	부패취약분야 및 신규입사자 등(151명)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총 3회)

- 2018.06.08 : 청렴윤리 QnA 14호(퇴직자 취업제한) 설명자료 게시
- 2018.07.02 : 퇴직자 취업제한 관련 문제현황 및 착오하기 쉬운 사항 등 게시
- 2019.01.04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및 유의사항, 공직자윤리위 개최일정 게시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제·개정

- 2015.06.08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제정
- 2018.07.25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3차 개정

개 정 사 항	비 고
- 취업심사 신청관련 개정서식 반영 · [별지 제18호의4 서식]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별지 제18호의5 서식] 취업 예정 확인서 · [별지 제18호의6 서식]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별지 제19호 서식] 취업승인 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반영

4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감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에 의거, 원자력발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부당한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

「원감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전력기술 「취업규칙」,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 임직원이 회사의 기밀누설, 직무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화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회사의 기밀이나 직무상 취득한 중요사항을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29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 제15조(재직 중 영업비밀누설 금지)

- ① 직원은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 규정에 따라 취급·관리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유출·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주요 감사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이용에 관한 내·외부 제보 및 신고사항 점검(연중)
- 정보관리 취약요소 지속점검(상시감사 모니터링/자체 감찰 : 수시)
 - 점검내용 : 문서보안, 정보보안 등 보안관리 실태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이용에 관한 내·외부 제보 및 신고사항

○ 원감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관련 내외부 제보/신고 접수 건: 없음

□ 정보관리 점검사항

점검명칭	점검기간	점 검 내 용	조 치
내 부 보안감사	2018.03.21 ~ 2018.05.02	기술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생활 보안 준수 여부 확인	▶ 부서별 취약항목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 징구 및 조치 여부 확인
	2018.11.27 ~ 2018.12.18		
용역수행 업 체 보안감사	2018.01.29 ~ 2018.02.19	용역수행업체를 통한 설계문서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보안활동 및 인식수준 점검	▶ 용역수행업체 직원들의 생활보안 수준 점검 강화 및 내외부 직원에 대한 보안 각서 징구 권고
	2018.06.01 ~ 2018.06.29		▶ 기본 계정 활성화 등 기본 적인 사이버보안 활동 미흡에 대한 개선 권고
	2018.09.17 ~ 2018.10.04		▶ 보안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대다수 업체에서 CMOS 비밀 번호 미설정, 기본계정 사용에 대한 개선 권고
	2018.11.28 ~ 2018.12.13		▶ WIPIMS 사용 일부 용역 수행사에서 퇴직직원의 사용자 등록을 변경 없이 사용하는 등 사이버보안 미흡에 대한 개선 권고

□ 회사 중요자료 접근 통제, 보안 강화 조치 실시

- 원자로 계통설계 전산화 시스템 적용·운영
- 도면 및 설계문서 관리시스템 적용·운영
- 디지털라이브러리 시스템 적용·운영
- 사이버보안관제실을 통한 자체 보안 관제 실시(2017.01 ~ 현재)
- 대외기관 보안감사 수검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산업부 정보보안 감사,
산업부 일반보안 감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등)

- 내부 보안감사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 불시 보안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연 8회)
- 협력업체 보안감사 실시 : 분기별 1회(연 4회)
- 기술자료 이용 이력 관제 시스템 운영

- 특이접속자 검출 후 사업PM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 재직자 752건 및 퇴직예정자 165건 통보 및 검토

(검토결과 이상 없음)

5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감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징계하도록 명시

「원감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2호 및 제3호 생략 …)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기술 「정관」, 「취업규칙」 및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등에 영리업무 금지사항을 규정화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등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행위(휴직 중 포함)

「취업규칙」 제13조(회사 업무에 종사)

직원이 취업기간 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임직원의 영리행위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내·외부 제보나 신고 등 다양한 탐지채널을 활성화하여 운영
 - 회사 신고시스템(신문고/레드휘슬)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
- 인사담당부서의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관련 업무 수행현황 및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 여부 등 점검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특별감사 실시
 - 원감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관련 내·외부 제보/신고접수 건 : 없음
- 정규직 전환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및 영리행위 금지 관련 안내 메일 발송 실시(2018.01.15)
- 회사업무 외 종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사전 협조 승인(12건)
 - 2018년 회사업무 외 종사

회사업무 외 종사 분류	2018년 승인 건수
대학 출강 승인(인사노무처 승인일 기준)	5건
외부위원 위촉 승인(인사노무처 승인일 기준)	7건

6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감법」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에 협력업체의 뇌물공여 등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행위 업체는 등록취소 등 제재 조치

「원감법」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행동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정('13.06.28)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4조(금품·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한전기술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한전기술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검찰기소 및 내·외부 제보나 신고 등을 활성화
- 협력업체 등록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징구 여부
- 협력업체 청렴윤리 실태조사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건수 : 없음
- 협력업체 등록 시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징구 현황
 - 협력약정업체 자격갱신 심사결과 적격업체 : 64개 업체
 - 2018년도 신규모집 협력업체 : 15개 업체
- 등록심사 109개 협력업체 실지조사('18.08.07 ~ '18.12.21)
 - 등록심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임직원에게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 유무 조사(실태조사표 작성)
 - 협력업체 방문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임직원에게 금품수수/
 향응/편의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협력업체 현장방문 간담회('18.08 ~ '18.09)
 - 협력약정업체 자격갱신심사 미신청/부적격업체 대상 현장방문 간담회 시행
 - 협력업체 35개사를 방문하여 업무관련 애로사항 청취,
 상생협력 도모 및 청렴도 제고

1 2019년도 윤리감사 추진방향

- 청렴도/부패방지시책/감사원 평가 최고등급(1등급) 달성 추진
 - 대내 및 대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 부패방지시책 과제 100% 이행을 위한 체계적 지표 관리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평가 항목별 추진 계획 수립, 이행
- 반부패체계 고도화
 -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및 감찰활동 강화
 -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선도
 - 전력그룹사/경북김천 클러스터간 청렴 및 반부패 업무 협력활동 강화
- 사내 청렴윤리 운영시스템 정립방안 추진
 - 청렴윤리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청렴윤리 활동 참여 보상제도 개선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청렴정책을 위한 제도 및 내부비리 신고 시스템 적극 홍보
- 감사인력 전문역량 강화
 - 국제내부감사사(CIA)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감사역량 제고
 - 리스크 평가결과 고위험 분야 도출 및 리스크 기반 감사활동 강화
 - 체계적인 감사교육 실시(감사원/청렴연수원 중심 감사기법 습득)
- 내부통제 기능 활성화 및 강화
 - e-감사시스템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체계적 사후 관리
 - 관행적 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감사 기능 강화 및 전문가 활용
 - 공기업 지정에 따른 관련 법률 및 제도 준수여부 관리감독 강화

② 2019년도 주요 감사계획

□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등을 통한 윤리감사 사항 점검

구 분	감 사 사 항	시 기	
종합감사	하도급계약 운영실태 종합감사	2019.01	
	임금관리 체계 및 시스템 종합감사	2019.03	
	방만경영실태 종합감사	2019.07	
	해외지사·현장 종합감사	2019.03 - 09	
	국내현장 종합감사	2019.03 - 11	
특별 감사	재무	2018 회계연도 결산감사	2019.02 - 03
	특정	기술자격 관리실태 특별감사	2019.02
		전산/방송장비 관리실태 특별감사	2019.04
		직원의 외부활동 신고 실태 감사	2019.05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	2019.07
		회사보유 지적재산 관리실태 특별감사	2019.09
		전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감사	2019.10
		EPC사업 특정감사	2019.11
복무	공직복무기강 특별감사	연중 수시	
종합/특별감사(감사 특명사항 및 수시 발생 건)		연중 수시	

※ 상기 감사일정/항목은 긴급사항 발생 및 대외감사 수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18년도 자체감사 실적

□ 실지감사(종합/재무/특정/성과/복무) : 총 23개 부문 감사 시행

구분	감사종류	연간계획(개)	실적(개)	처분요구 실적(건)											신분상 조치인원(명)			재무상 조치금액(천원)
				총건수	변상	장계	사정	경고·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과발	모범사례	한치조치	장계	과발	경고·주의	
내부감사	종합감사	1	3	27	-	-	4	-	3	4	5	-	6	5	-	-	-	-
	재무감사	1	2	10	-	-	7	-	-	3	-	-	-	-	-	-	-	-
	특정감사	5	10	104	-	-	39	4	16	18	19	-	6	2	-	-	7	242,695
	복무감사	3	8	31	-	4	1	11	5	4	2	-	1	3	4	-	132	-
	성과감사	-	-	-	-	-	-	-	-	-	-	-	-	-	-	-	-	-
	합계	10	23	182	-	4	51	15	24	29	26	-	13	10	4	-	139	242,695
	일상감사	-	1,170	248	-	-	-	-	-	248	-	-	-	-	-	-	-	-
외부감사	감사원	-	-	-	-	-	-	-	-	-	-	-	-	-	-	-	-	
	주무부처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